

2016년 6월 18일 시행
지방직 행정법총론 시험총평

행정법총론 김욱 교수

○ 단원별 출제 분포도

편	분야	출제문항수	
제1편 행정법 서론	행정과 행정법	1	4
	행정상 법률관계	2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행정입법	1	7
	행정행위	3	
	그 밖의 행정작용	1	
	행정절차	1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2	2
제4편 행정구제	행정상손해배상	1	7
	행정심판	1	
	행정소송	5	

○ 총평

문제가 번잡하지 않았다.

수험생의 정확한 지식을 온전히 점수로 끌어낼 수 있는 문제가 엄선되었다.

기본이론과 기본판례에 충실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데 애로를 느꼈을 문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2016년 국가직 9급 보다 2.5 ~ 3문제 정도 쉬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100점을 얻은 학생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대책

(1) 이론과 판례의 병행학습

① 이론과 판례를 병행하여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② 이론의 핵심적 사항을 파악하고 그 이론에 해당하는 대표적 판례 2~3개 정도를 병행·학습하여 기본적 사항을 충실히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 법령 주요규정의 명확한 이해

법학은 실정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법령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법학공부에 있어서의 기본이다.

1.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 ②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③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정답] ④

[해설] ④의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 ③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 ④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정답] ①

[해설] ① 옳음.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② 틀림. 대법원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틀림.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에 의해 결정된다. ④ 틀림.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된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한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도시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은 없다.
- ③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④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

[정답] ②

[해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4.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 ②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 하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 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ㄷ. 건축물 준공검사처분
-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②

[해설] ㄱ : 인가. ㄴ : 특허. ㄷ : 확인(또는 허가). ㄹ : 인가

6.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말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표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면 실시할 수 있다.

- ④ 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가능하다. 즉, 공청회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여 전자공청회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 ④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옳음. 개인정보단체소송은 분쟁조정전치주의 및 소송허가제이다. ② 틀림.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③ 틀림. ③의 경우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④ 틀림. ④의 경우 1백명 이상이 아니라 1천명 이상이다.

8. 행정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私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 ③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만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②

[해설] ② 옳음. ① 틀림.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③ 틀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④ 틀림.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된다 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①

[해설]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0.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A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②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 ③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④

[해설] ④의 경우, 재단법인인 수녀원에게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 ②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 ③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해설]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그 신청은 허가(새로운 허가)의 신청일 뿐이므로 행정청은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

니라 허가(새로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12.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④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판례는 항고소송(취소소송)의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제1차 계고가 행정처분이라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 ④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④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판례).

1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 당시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②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 기회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 ④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의 하자는 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치유된다.

[정답] ③

[해설] ③ 옳음. ③은 판례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대표적인 예이다. ① 틀림. 모든 하자에 대해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형식·절차상의 취소사유인 하자에 대해, 쟁송제기 이전까지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 ② 틀림. 무효인 경우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의 징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인 경우이다. ④ 틀림. ④의 경우, 판례는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 제출에 의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15. 「도로법」 제61조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도로관리청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甲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③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甲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③ 옳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부작위행정청(乙)은 인용처분을 할 수도 있고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① 틀림. 도로점용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판결이 있어도 행정청(乙)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틀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단지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절차적심리설(통설·판례)]. 즉, 행정청(乙)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까지를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틀림. 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16.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③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에 위반하여 재판상 직무행위를 한 경우여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17.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에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칩·뎀학습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더라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의 경우, 판례는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18.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 ②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 옳음. ③의 경우, 판례가 과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무효확인소송을 인정한다. ① 틀림. ①의 경우, 피고인 행정청이 아니라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틀림. 내용상의 위법도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한다(다수설·판례). ④ 틀림.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19.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친일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가 결정되고, 그 서훈취소에 따라 훈장 등을 환수조치하여 달라는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다.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④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①

[해설] 판례는 처분권자와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처분권자를 피고로 본다. ①에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을 한 자(처분권자)는 대통령이고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을 통보(통지)한 자는 국가보훈처장이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20. 「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옳음. 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① 틀림. 불고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까지 취소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①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재결을 하여서는 안 되고 본안심리를 하여 본안에 관한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틀림.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④ 틀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내려진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재심판청구의 금지).

